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4. 6. 20(목) 10:00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13호

나. 제 출 자 : 고영찬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 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, 이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)

4. 관계법령

○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,「지방자치법」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 및 후세대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, 이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6개의 조무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.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-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1) 및 이북5도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

¹⁾ 이북5도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의 도(道)로서 황해도, 평안남도, 평안북도, 함경 남도 및 함경북도 등 이북5도와 경기도, 강원도의 미수복 市와 郡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

-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그 후세대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북5도민들과 그 후세대들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관계법령 1부. 끝.

불 임 관계법령
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[시행 2023. 6. 11.] [법률 제19427호, 2023. 6. 7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6. 7.>

- 1. "이북5도"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(道)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, 평안남도, 평안북도, 함경남도, 함경북도를 말 한다.
- 2. "미수복 시·군"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(市)와 군(郡)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5, 5, 18_.]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 - 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・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・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・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